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설치·운영 관련 중요사항 명시 등>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44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권리침해정보 관련 통지사항 확대(안 제44조의2 제2항)	3
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설치·운영 관련 중요사항 명시(안 제44조의10 등)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준호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3. 18.

다. 회 부 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은 해당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 사이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쉽게 알기 어렵고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있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명예

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공백이 발생함.

이에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된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등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조치를 한 사실과 함께 해당 정보를 게재·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10,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권리침해정보 관련 통지사항 확대(안 제44조의2 제2항)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의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과 함께 다음의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함(안 제44조의2 제2항).
 - 제44조의6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재·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제2호)
 - 제44조의12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제3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생략)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u>알려야</u>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u>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u>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⑥ (생략)	② ----- ----- ----- ----- -----<u>다음 각 호의 사실</u> <u>을 알려야</u>-----. -----<u>제1호의</u>----- ----- ----- -----. 1. <u>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u> 2. <u>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재·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u> 3. <u>제44조의12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음.
 - (제44조의2) 권리침해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권리침해당사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함²⁾.
 -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권리침해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³⁾.
 - (제44조의6) 특정한 이용자의 정보 게재·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1)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2)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⁴⁾.

- (제44조의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리침해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둠⁵⁾.

- 그런데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삭제 등 요청은 해당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하는 것인 반면,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신청은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하여야 하므로,
권리침해당사자가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삭제 등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처리결과와 함께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

4)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조정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법상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권리침해당사자
이므로 정보게재자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를 할 수 없으며,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권리침해정보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현재 정보게재자의 경우 권리침해당사자의 조정
신청에 의해 조정당사자가 될 수 있을 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정보게재자에게 본인이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와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현 제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 제44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통지 대상을 권리침해
당사자인 ‘신청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인지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를 안내
하도록 하여 관련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인터넷진흥원)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가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권리침해당사자(신청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설치·운영 관련 중요사항 명시(안 제44조의10 등)

가. 개정안 요지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조정위원의 임기(안 제44조의10 제3항)
 -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44조의11)
 - 분쟁조정의 신청 및 절차, 거부 및 중지(안 제44조의12부터 제44조의14까지)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u> 를 두되, 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 ----- ----- ----- ----- ----- ----- ----- -----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 ----- -----.
②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u> 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② <u>분쟁조정부의 위원</u> (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

현행	개정안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 ③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필요한----- -----. 제44조의11(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 회부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현행	개정안
	1. <u>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강력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u> 2. <u>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u> 4. <u>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 ② <u>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u> ③ <u>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u> <u>제44조의12(분쟁조정의 신청 등)</u> ①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u>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u> ③ <u>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신청 및 접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44조의13(분쟁조정의 절차 등)</u> ① <u>심의위원회는 제44조의12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u> ② <u>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u>

현행	개정안
	<u>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u> <u>③ 분쟁조정부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u> <u>⑤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u> <u>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u>

현행	개정안
<신설>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⑦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6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제7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4(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66조(비밀유지 등) ----- ----- ----- ----- -----

현행	개정안
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의10에 따른 <u>명예훼손 분쟁조정</u> 부의 분쟁조정 업무	5. ----- <u>분쟁조정</u> 부-----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권리침해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면서,
- 동조 제3항에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44조의10 제3항에 따른 준용규정 내용>

조문	주요내용
(구) 정보통신망법 제33조의2 제2항	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
(구) 정보통신망법 제3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구) 정보통신망법 제36조	분쟁조정 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안 작성

조문	주요내용
(구) 정보통신망법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 요청 및 분쟁당사자·참고인 출석요청
(구) 정보통신망법 제38조	분쟁조정의 성립 절차 및 분쟁조정의 효력
(구) 정보통신망법 제39조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그런데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현행 제44조의10 제3항이 준용할 조문이 없게 됨.
- 이에 현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⁶⁾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⁷⁾,
이미 삭제된 조문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볼 수 있다는 점,

6)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7) 개정안의 내용과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비교는 참고자료 참조

국민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조정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 달리⁸⁾,
안 제44조의13 제6항은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음에도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시행 당시 조정이 진행 중인 분쟁의 조정 성립에 대하여 절차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적용례)을 통해 적용 시점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준용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한 준용규정 삭제로 인한 공백상태를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8) 제20조(조정의 불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부에서 조정안을 건의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는 현행 절차는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분쟁조정부가 직접 조정안을 의결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4조의13 제4항의 경우 조정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한 내용의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낮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함.

- 한편, 현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정대상 및 절차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동법 개정안⁹⁾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0

9) 의안번호 제2203370호(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제2204215호(이상희의원 대표발의)

※참고: 개정안과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내용 비교

(1) 조정위원의 임기

개 정 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③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조정위원의 임기) ①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은 제2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 정 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4조의11(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 회부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7조(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 정 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강력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

개 정 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로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정위원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분쟁조정의 신청·절차 등

개 정 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의12(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	제5조(조정신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통지)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

개 정 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신청 및 접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3(분쟁조정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44조의12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조	는 ID(닉네임)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되, 신청인의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조정 전 합의권고)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가 불

개 정 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부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조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 정부가 건의한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개 정 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⑦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6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	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 의 불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조정 의 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 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 모

개 정 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제7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두가 조정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조정의 거부 및 중지

개 정 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의14(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 정 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되는 경우 3.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22조(조정지 중지)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